

경상북도 신기술 및 우수기술 활용에 관한 운영 규정

2021. 12.

목 차

I. 총 칙	-----	1
II. 공법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	12
III. 신기술 및 우수기술 지정·등록	-----	19
IV.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설계반영)	-----	24

총 칙

1. 소 개

우리 도는 정부에서 인증을 받지 못한 지역의 우수한 기술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경상북도 신(新, 信)기술 오픈 마켓'에 등록된 지역기업의 우수한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나아가 지역기업의 이익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2. 관련법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나. 건설기술진흥법

- 1)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 2) 신기술·신제품 통합 인증요령
- 3) 건설신기술 협약 등에 관한 규정
- 4)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 5)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

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 1) 교통신기술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

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 1) 환경신기술에 대한 입찰가점 부여 기준

마. 자연재해대책법

- 1) 방재기술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바.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 1) 해양수산신기술 인증제도 운영요령

사. 산업기술혁신촉진법

- 1) 신기술(NET) 인증제도 운영요령

아. 특허법

- 1)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자. 경상북도 신기술 및 우수기술 활용에 관한 조례

1) 경상북도 신기술 및 우수기술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3. 용어의 정의

가. ‘신기술’이란 개별 법령에 따라 지정·고시한 새로운 기술로 보호 기간 내에 있는 다음 각 기술을 말한다.

-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건설신기술**
-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른 **환경신기술**
- 3)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른 **방재신기술**
- 4)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따른 **교통신기술**
- 5)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7조에 따른 **해양수산신기술**

※ 신기술(NET)보호기간

신 기술 명		보호기간		관 련 법	운영기관
		최초	연장		
정인신기술 (NET ¹⁾)	건설신기술	8년	7년	건설기술진흥법	국토교통부
	교통신기술	5년	7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국토교통부
	환경신기술	5년	5년(인증) 7년(검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환경부
	방재신기술	5년	12년	자연재해대책법	행정안전부
	해양수산신기술	5년	5년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해양수산부

나. ‘특허’란 특허법에 따라 출원·등록하여 지식(산업)재산권에 대한 일정한 법률적 권리나 능력을 설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 ‘우수기술’이란 경상북도가 신규성·진보성·현장적용성 등을 검토하여 지정·등록한 건설기술을 말한다.

라. ‘기술개발자’란 신기술 또는 우수기술로 지정을 받은 자 또는 업체를 말한다.

마. ‘공법선정위원회’란 공사에 적용할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신기술

1) 신기술(NET) : 「신기술 통합인증요령」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증한 신기술(New Excellent Technology : NET)을 말한다.

및 우수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과 지역 우수기술의 지정·등록을 심사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신기술 및 우수기술 활용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위원회이다.

바. ‘발주처’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신기술·특허 및 우수기술 등을 적용하는 다음 각 호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1) 도(경상북도) 본청

2) 도(경상북도) 직속기관, 지역본부 및 사업소

사.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건설공사를 말한다.

아. ‘경상북도 신기술 오픈마켓’이란 「경상북도 신기술 및 우수기술 활용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구축한 통합정보시스템을 말한다.(이하 “신기술 오픈마켓”이라 한다.)

자. ‘운영부서’란 「경상북도 신기술 및 우수기술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법선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차. ‘등록심의’란 공법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특허 등에 대한 신규성·진보성·현장적용성을 검토하여 ‘신기술 오픈마켓’에 우수기술로 지정·등록하는 심의를 말한다.

카. ‘선정심의’란 위원회가 건설공사의 설계에 적합한 신기술·특허공법 등을 선정하는 심의를 말한다.

4. 적용범위 및 대상

가. 본 규정은 발주처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및 우수기술과 관련한 업무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규정으로 제반 여건과 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나. 신기술 및 우수기술의 등록은 「경상북도 신기술 및 우수기술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제4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 개발자의 신청에 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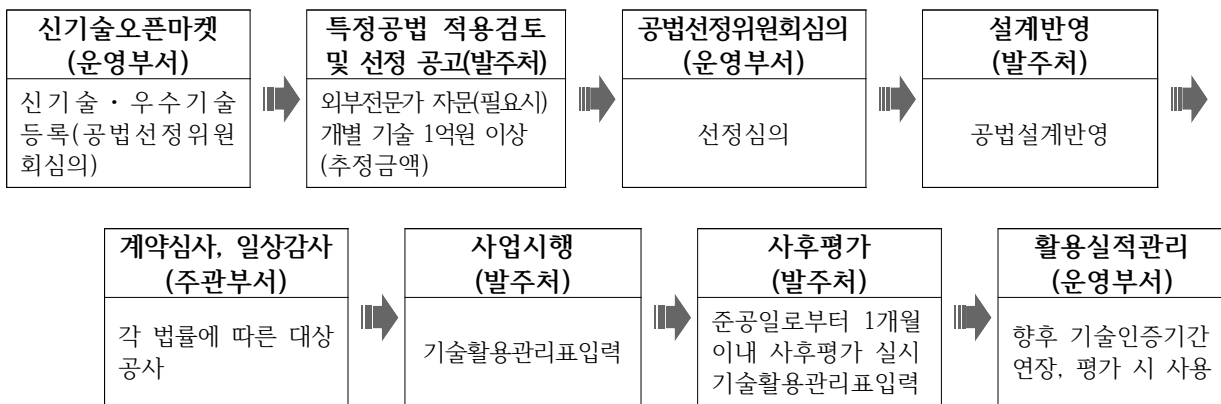
다. 건설공사에 반영하는 신기술·특허공법 등을 선정하는 일반적인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발주처의 장은 공사에 적용될 공법의 특성을 감안

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라 사전협의하여 동 기준과 달리 정하여 심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적용기준 및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라. 신기술 및 우수기술 업무와 관련하여 상위 법률에서 정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마. 개별 기술 추정금액(도급금액+관급자재금액) 1억 원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해당 공법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추정금액 1억원 미만도 적용할 수 있다.

5. 신기술 및 우수기술 활용 흐름도



6. 신기술 분류체계

가. 운영부서의 장은 신기술·우수기술 분류체계에 대하여 개정의 용이성, 중복성 최소화, 상충성 해결, 사용자 편의성, 신규코드 확장성 등을 가지고 신기술 등록과 변화에 따라 우리 도 환경에 맞도록 지속적인 정리와 탄력적인 운영을 병행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나. ‘신기술 오픈마켓’에 등록할 경우 대분류-중분류-소분류로 구분하여 항목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 신기술·우수기술의 분류체계는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하고, 필요 시 공법선정위원회 의결에 따라 변경하거나 조정 할 수 있다.

<신기술 분류표(대분류 21, 중분류 127, 소분류 597)>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또는 예시)	비고
A.공통	01.조사	01.입지환경조사 02.해상조사 03.항만환경조사 04.지반조사 05.기타	
	02.측량	01.시공측량 02.수심측량 03.기타	
	03.시험 및 계측	01.시험 02.계측 03.기타	
	04.기타	01.기타	
B.지반	01.지반일반	01.시공중 지반조사 02.시공중 지반계측 03.기타	
	02.토공	01.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02.땅깎기(절토) 03.터파기 04.흙쌓기(성토) 05.되메우기 및 뒤채움 06.사토 및 잔토처리 07.기타	
	03.연약지반계량	01.연약지반개량 일반 02.치환공 03.수평배수공 04.연직배수공 및 선행재하 05.지하수위 저하공 06.고결공 07.다짐공 08.경량제 쌓기공 09.지반그라우팅 10.기타	
	04.배수공	01.철근콘크리트 암거 02.파형강판 암거 03.배수관 04.지하배수 05.노면배수 06.고결공 07.다짐공 08.경량제 쌓기공 09.지반그라우팅 10.기타	
	05.공동구	01.공동구 02.기타	
	06.기초공	01.얕은기초 02.현장타설 콘크리트말뚝 03.기설말뚝 04.널말뚝 05.노면배수 06.비탈면배수 07.시공할 대의 배수 08.기타	
	07.앵커공	01.앵커공 02.기타	
	08.비탈면보강공	01.네일 02.록볼트 03.엄지말뚝 04.기타	
	09.비탈면보호공	01.격자블록 및 돌(블록)붙이기 02.콘크리트 뿔어붙이기 03.비탈면 녹화 04.기타	
	10.낙석·토석 대책시설	01.낙석방지망 02.낙석방지울타리 03.낙석방지옹벽 04.피암터널 05.토석류 대책시설 06.기타 낙석·토석 대책시설 07.기타	
	11.옹벽공	01.콘크리트 옹벽 02.보강토 옹벽 03.돌망태 옹벽 04.기대기 옹벽 05.돌(블록)쌓기 옹벽 06.기타	
	12.기타	01.기타	
C.구조재료	01.콘크리트공	01.일반콘크리트 02.철근 03.거푸집 및 동바리 04.경량골재 05.순환골재 06.섬유보강 07.폴리머시멘트 08.팽창 09.수밀 10.유동화 11.고유동 12.고강도 13.방사선 차폐 14.한중 15.서중 16.매스 17.수중 18.해양 19.프리플레이스트 20.숏크리트 21.프리캐스트 22.프리스트레스 23.합성구조 24.기타	
	02.강구조공	01.강구조 일반 02.제작 03.용접 04.볼트접합 및 핀연결 05.조립 및 설치	

		06.도장 07.용융아연도금 08.내화피복 09.데크플레이트 및 바닥슬라브 10.기타	
	03.기타	01.기타	
D.내진	01.내진	01.내진 02.기타	
E.가설	01.공통가설공	01.현장가설시설물 02.건설지원장비 03.환경관리시설 04.기타	
	02.가설흡막이공	01.가설흡막이공 02.기타	
	03.가물막이, 축도, 가도, 우회도로	01.가물막이 02.축도 03.가도 04.우회도로 05.기타	
	04.가설교량 및 노면복공	01.가설교량 02.노면복공 03.기타	
	05.거푸집 및 동바리	01.초고층·고주탑 공사용 거푸집 및 동바리 02.노출 콘크리트용 거푸집 및 동바리 03.기타 콘크리트용 거푸집 및 동바리 04.기타	
	06.비계공	01.비계 02.작업발판 및 통로 03.기타	
	07.안전시설공	01.추락재해방지시설 02.낙하물재해방지시설 03.기타	
	08.기타	01.기타	
F.교량	01.콘크리트교량	01.콘크리트교량 02.기타	
	02.콘크리트가설	01.ILM공법 02.FCM공법 03.FSM공법 04.MSS공 법 05.PSM공법 06.교량하부구조물 07.기타	
	03.강교량	01.강교량 02.기타	
	04.교량부대시설	01.교량받침 02.신축이음 03.교량난간 04.교면방수 05.교량배수시설 06.교량점검시설 07.기타	
	05.기타	01.기타	
G.터널	01.터널일반	01.터널굴착 02.TBM 03.터널지보재 04.기타	
	02.터널라이닝	01.현장타설 02.세그먼트 03.기타	
	03.터널보강 및 안정	01.배수 및 방수 02.계측 03.보조공법 04.기타	
	04.작업환경	01.작업환경 02.기타	
	05.기타	01.기타	
H.설비	01.기계설비공통	01.보온 02.도장방청방식 03.배관설비 04.덕트설비 05.빌딩 커미셔너 06.기타	
	02.공기조화설비	01.열원기기설비 02.공기조화설비 03.환기설비 04.시험조종 05.기타	
	03.급배수위생설비	01.위생기구설비 02.급수설비 03.급탕설비 04.배수통기설비 05.오수정화 및 물재이용성비 06.기타	
	04.설비자동제어	01.중앙관제설비 02.현장제어설비 03.원격검침설비 04.공동주택자동제어설비 06.기타	
	05.냉동냉장설비	01.냉동냉장설비 02.기타	
	06.소방기계설비	01.물소화설비 02.가스소화설비 03.기타소화설비 04.제연설비 05.피난 및 구조설비	

		06.위험물 탱크설비 07.소방용품(피복) 08.기타	
	07.기타설비	01.가스설비 02.방음방진 및 내진 설비 03.신재생에너지설비 04.클린룸설비 05.기타	
	08.반송(차량)설비	01.엘리베이터설비 02.에스컬레이터설비 03.휠체어리프트설비 04.일반차량 05.특수차량 06.기타	
	09.건축물 전원설비	01.옥외전기 02.수변전설비 03.예비전원설비 04.선전원설비 05.기타	
	10.배선 및 부하설비	01.간선설비 02.배선설비 03.동력설비 04.반송설비 05.기타	
	11.조명설비	01.옥내조명설비 02.옥외조명설비 03.경관 및 조경조명설비 04.도로조명설비 05.터널조명설비 06.기타	
	12.제어 및 정보통신설비	01.감시제어설비 02.전기통신설비 03.정보설비 04.약전설비 05.기타	
	13.건축물 방재설비	01.피뢰설비 02.접지설비 03.소방전기설비 04.방범설비 05.항공장애표시등설비 06.항공등화설비 07.기타	
	14.시설물별 전기설비	01.공동구 전기설비 02.조경 전기설비 03.구조물 전기설비 04.기타	
	15.산업환경설비	01.생활폐기물 소각시설 02.하수처리시설 03.열병합발전시설 04.지역잔방시설 05.석유비축 및 송유관시설 06.가스공급시설 07.수문 및 갑문설비 08.생활폐기물 09.중수처리시설 10.산업환경자동제어설비 11.기타	
	16.전산장비	01.일반전산장비 02.소프트웨어 03.기타	
	17.기타	01.기타	
I.조경	01.식재	01.일반식재 02.인공식재 03.수목이식 04.잔디식재 05.기타	
	02.조경시설물	01.조경구조물 02.현장제작설치 03.옥외시설물 04.놀이시설 05.운동 및 체력단련시설 06.수경시설 07.환경조형시설 08.조경석 09.조경 급배수 및 관수 10.기타	
	03.기타	01.기타	
J.건축	01.목공	01.목공사 일반 02.한옥목조 03.경량목조 04.대단면목조 05.통나무목조 06.사무용가구 07.기타	
	02.조적공	01.벽돌공사 02.내화벽돌 03.벽돌조 복원 및 청소 04.블록 05.단순조적블록 06.보강블록 07.거푸집블록 08.ALC블록 09.조적조 문화재보존 10.기타	
	03.석공	01.화강석 02.대리석 03.테라조 04.기타통석 05.건식 석재 06.석재 쌓기 07.석축	

		08.인조대리석 09.물다듬 무늬석 10.엔틱 대리석 11.기타	
04.방수공		01.아스팔트방수 02.아스팔트시트방수 03.합성고분자계 시트방수 04.자착형 시트방수 05.도막방수 06.시트 및 도막 복합방수 07.시멘트모르타르계방수 08.규산질계 도포방수 09.금속편방수 10.벤토나이트방수 11.실링공사 12.지하구체 외면방수 13.옥상녹화방수 14.발수 15.수팽창 지수재 및 지수판 16.누수보수 17.지하수조 내부 방수·방식 18.기타	
05.방습공		01.방습공 02.기타	
06.단열공		01.단열공 02.기타	
07.방화공 및 내화공		01.내화충전시스템 02.내화피복 03.기타	
08.미장공		01.시멘트 모르타르 02.시멘트스코터 03.컬러시멘트 바닥 마무리 04.인조석 바름 및 테라조 05.석고 플라스터 06.돌로마이트 플라스터 07.회반죽 08.외바탕 흙벽 09.합성수지 플라스터 10.합성고분자 바닥 11.셀프 레벨링제 12.바닥 강화재 13.단열 모르타르 14.골재 나타내기 15.내화학 16.롤러문양 마무리 17.제물 18.기타	
09.도장공		01.도장공 02.기타	
10.타일 및 테라코타공		01.타일 02.프리캐스트콘크리트 03.테라코타 04.기타	
11.금속공		01.금속 현장제작 02.금속 기성제품 03.기타	
12.수장공		01.바탕 02.바닥 03.벽 04.도배 05.커튼 및 블라인더 06.기타	
13.천장공		01.천장공 02.기타	
14.온돌공		01.온수 온돌 02.조립식 온돌 03.기타	
15.외벽공		01.금속 커튼월 02.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커튼월 03.조립식 패널 외벽 04.ALC패널 05.기타	
16.창호 및 유리공		01.알루미늄 합성제 창호 02.합성수지제 창호 03.복합소재 창호 04.목제 창호 05.강제 창호 06.스테인리스 스틸 창호 07.문 08.유리 09.기타	
17.지붕공		01.점토 및 시멘트 기와 02.한식기와 03.금속기와 04.아스팔트 싱글 05.섬유강화 시멘트판 06.금속판 지붕 07.금속 지붕 패널 08.금속 절판 지붕 09.이피디엠 시트지붕 10.티피오시트 지붕 11.아스팔트 지붕 12.폼 스프레이 단열 지붕 13.지붕 부속 자재 14.기타	

	18. 특수건축공	01.막과 케이블 구조 02.스페이스프레임 03.기성형 창고형 냉동·냉장실 04.X-선 차폐 05.청정실 06.기타	
	19.건축물 부대공	01.건축물 대문,담장,울타리 02.건축물 배수 03.건축물 오수정화시설 04.건축물 정화조 05.건축물 우물 06.건축물 굴뚝 07.건축물 잡시설 08.건축물 공동구 09.기타	
	20.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01.분별해체 02.해체폐기물의처리 및 자원재활용 03.기타	
	21.기타	01.기타	
K.도로	01.도로배수공	01.노면배수 02.배수관 03.지하배수 04.공사중 배수 05.지수공 06.기타	
	02.도로포장공	01.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02.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03.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04.기타	
	03.도로포장공사용자재	01.시멘트 02.역청재 03.골재 04.시멘트콘크리트 05.기타	
	04.도로안전관리시설	01.도로안전시설 02.교통관리시설 03.방재시설 및 장치 등 04.기타	
	05.도로부대시설	01.콘크리트 블로포장 02.표토덮기 03.가설사무실 04.우회도로공 05.기타	
	06.환경시설	01.방음벽 02.생태통로 및 가드웬스 03.환경관리 04.기타	
	07.도로유지관리	01.아스팔트 콘크리트 덧씌우기 포장 02.접착식 콘크리트 덧씌우기 포장 03.비접착식 콘크리트 덧씌우기 포장 04.기타	
	08.기타	01.기타	
L.철도	01.철도노반	01.운행선 근접공사 02.기타	
	02.철도궤도	01.자갈궤도 02.콘크리트궤도 03.분기기 부설 04.레일신축이음장치 05.레일용접 06.장대레일 설정 및 재설정 07.부대공 08.운행선 09.기타	
	03.기타	01.기타	
M.하천	01.하천 이수시설	01.하천 보 02.하천 어도 03.하천 취수시설 04.하천 주운시설 05.기타	
	02.하천 치수시설	01.하천 제방 02.하천 호안 03.하천 수제 04.하천 하상유지시설 05.하천 하상정리 06.하천 수문 07.하천 내수배제시설 08.하천 사방공 09.하천 하구공 10.기타	
	03.기타	01.하천 수로터널 02.자연형 하천 03.기타	
N.댐	01.필댐	01.필댐 02.기타	
	02.표면차수벽형 석괴댐	01.표면차수벽형 석괴댐 02.기타	
	03.콘크리트 중력식댐	01.콘크리트 중력식댐 02.기타	

	04.롤러다짐콘크리트댐	01.롤러다짐콘크리트댐 02.기타	
	05.아치댐	01.아치댐 02.기타	
	06.댐 기타시설	01.댐 기타시설 02.기타	
	07.댐 유지관리	01.댐 유지관리 02.기타	
O.상수도	01.취수시설	01.하천수,댐,호소수 취수시설 02.복류수, 강변수 취수시설 03.지하수 취수시설 04.해수 취수시설 05.기타	
	02.관로부설	01.상수도관 취급·운반 02.관로부설 03.관종별 접합04.도복장 05.밸브 및 부속설비 설치 06.수압시험 및 수압검사 07.통수,수계전환,준공 08.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 09.기타	
	03.정수처리시설	01.정수처리시설 설치 02.정수처리시설 방수 03.정수장 종합시운전 04.기타	
	04.급수시설	01.급수설비 설치 02.불용관 정비 및 누수복구 03.기타	
	05.기존관 세척 및 갱생	01.상수도 세척공 02.상수도 갱생공 03.상수도공사 시험 및 검사 04.기타	
	06.특수공	01.수관교 설치 02.전기방식 설비 03.보호관 및 철관 추진공 04.상수도 파이프루프공 05.상수도 세미셴드 터널공 06.상수도 수로터널공 07.상수도 셴드TBM공 08.기타	
	07.기계공	01.펌프설비 02.밸브 및 수문설비 03.공기기계설비 04.운반하역기계설비 05.약품투입설비 06.염소주입설비 07.약품혼화설비 08.응집설비 09.슬러지 수집설비 10.탈수설비 11.기타	
	08.전기공	01.전기설비 02.기타	
	09.계측공	01.중앙감시제어설비 02.현장감시제어설비 03.감시제어소프트웨어 04.제어반 05.모자익감시반 06.영상감시반 07.수위계 08.유량계 09.압력계 10.수질측정장치 11.도압배관 12.CCTV설치 13.기타	
	10.기타	01.기타	
P.하수도	01.관거	01.관의 취급, 운반 및 보관 02.관부설 03.관의 연결 04.배수설비 05.기존관 부분보수 및 전체보수 06.유지관리 모니터널 시스템 07.기타	
	02.펌프장	01.펌프장 02.기타	
	03.비점오염 저감시설	01.저류형시설 02.침투형시설 03.식생형시설 04.장치형시설 05.기타	
	04.특수공	01.추진공 02.압송식 하수도공	

		03.진공식 하수도공 04.압력식 하수도공 05.하수도 터널 06.기타	
	05.하수처리장	01.하수처리장 02.기타	
	06.기타	01.기타	
Q.항만 및 어항	01.항만 및 어항	01.항만 및 어항 02.기타	
R.농업생산 기반	01.농업생산기반	01.농업생산기반 02.기타	
S.시설물 유지관리	01.구조물 보수·보강	01.구조물 보수·보강 02.기타	
	02.구조물 방수·방식	01.구조물 방수·방식 02.기타	
	03.기타	01.기타	
T.시설물 안전	01.교량 및 터널	01.교량 02.터널 03.옹벽 및 절토사면 04.공동구 05.기타	
	02.수리	01.댐 02.하천 03.상하수도 04.기타	
	03.항만	01.항만 02.기타	
	04.건축	01.건축물 02.기타	
	05.소방	01.소방 02.기타	
	06.전기	01.전기 02.기타	
	07.기계	01.기계 02.기타	
	08.가스	01.가스 02.기타	
	09.기타	01.기타 02.기타	
U.기타	01.기타	01.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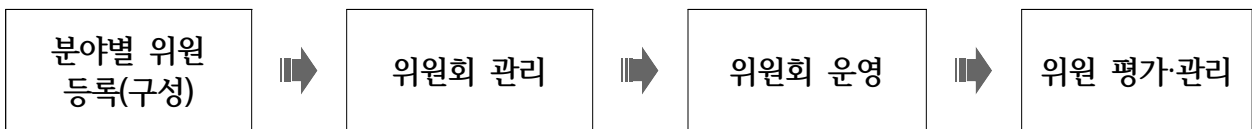
II 공법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개요

가. 운영부서의 장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공법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신기술·특허공법 및 우수기술의 등록·선정 등의 심의회를 개최하고 공법선정위원회가 최상의 상태로 운영·관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발주처의 장은 신기술·특허공법 및 우수기술의 등록·선정 등에 관한 심의와 자문 등에 해당분야 전문가로 공법선정위원회의 위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2. 업무흐름도



<단계별 업무추진절차>

<p>① 공법선정위원회 위원 등록(구성) (II-3 참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야별 전문가 모집 시기(필요시 공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기 2년 • 200명 이내 ▶ 신청서 등 제출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 • 자격증, 학력사항, 경력사항, 평가경력 등 증빙서류 ▶ 전문분야 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기술 분류표 참고
--	---



<p>② 공법선정위원회 관리(II-4 참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적격자 관리(제외기간 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기술 등 등록과 선정 등에 부정 및 부당행위자 ▶ 위원 충원 (필요시 수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 중 남은 임기
----------------------------------	---



<p>③ 공법선정위원회 운영(Ⅱ-5참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 개최계획 수립 ▶ 위원회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 • 위원장 호선으로 선출, 간사 기술감사팀장 • 7인 이상 참석 시 위원회 개최 • 위원은 공법특성을 고려한 분야별 전문가 선발·구성 ▶ 위원회 개최 통보 ▶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기술(우수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 • 신기술(우수기술) 심의·등록 •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심의(설계반영) 및 자문 • 신기술(우수기술) 사전성능검증 • 시험시공 실시 여부 심의 등 ▶ 제출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심의 개최 ▶ 심의 결과는 심의로부터 7일 이내 서면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득이한 경우 심의기간 연장 가능
--------------------------------	---

3. 공법선정위원회 위원 등록(구성)

가. 위원회는 20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위촉하고,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 1) 건설업무와 관련된 국가기관 및 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 2) 건설 관련 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3) 건설 관련 단체의 임원 및 투자기관의 임원
- 4) 해당 분야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5) 해당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 6)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7) 그 밖에 건설공사의 신기술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마. 공법선정위원회 위원 신청 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1) 공법선정위원회 위원 신청서(서식 II-1)
- 2) 재직증명서
- 3) 자격증, 학력사항, 경력사항 등에 대한 증빙서류
- 4) 그 밖에 운영부서의 장이 필요로 하는 서류

바. 운영부서의 장은 공법선정위원 의원 신청 관련서류를 확인한 결과 적정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산업계, 학계 등 소속기관 유형 및 전문분야를 구분하여 위원으로 선정하고 공법선정위원회 위원 등록대장(서식 II-2)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부서의 장이 직접 위원을 모집하거나 선정하여 등록할 수 있다.

라. 공법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소속기관 및 유형이 변경되거나 전문분야를 변경할 경우에는 공법선정위원회 위원 변경신청서(서식 II-4)를 작성하고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운영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운영부서의 장은 공법선정위원회 위원 등록과 같은 절차에 따라 변경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4. 공법선정위원회 위원회 평가·관리

가. 운영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부적격자를 평가하여 공법선정위원회 위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그리고 부적격자로 제외된 자는 2년 이내에 공법선정위원회에 위촉할 수 없다.

- 1) 신기술·특허공법 및 우수기술 등록·선정 등에 부정·부당행위자

- 2) 기타 사유로 공법선정위원회에 1년 이상 참석이 불가능한 자 등 운영부서의 장이 부적격하다고 판단한 자
- 나. 운영부서의 장은 공법선정위원회의 위원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분야의 위원을 수시로 총원할 수 있다. 다만, 공법선정위원회의 위원 등록과 같은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5. 공법선정위원회 운영

가. 운영부서의 장은 신기술 및 우수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과 지역 우수기술의 지정·등록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법선정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신기술 및 우수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
- 2) 신기술 및 우수기술 지정·등록에 관한 사항
- 3) 설계에 적합한 신기술·특허공법 등의 선정
- 4) 신기술 및 우수기술의 사전성능검증 사항
- 5) 시험시공의 실시 여부
- 6) 발주처에서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공법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및 자문
-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운영부서의 장은 심의 및 자문요청이 있거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공법선정위원회를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법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한다.

- 1)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해야 하며 제안서 평가를 할 수 있다.
- 2) 간사는 운영부서의 담당으로 한다.
- 3) 위원회 개최는 위원 중 7인 이상이 참석한 경우 개최 할 수 있다.

다. 운영부서는 제안 참여자의 제안서 제출 전일까지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외부전문가 회의 참여자를 포함할 수 있다.)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라. 발주처는 제안 참여자가 제안서 제출 시 운영부서에서 미리 정한 평가위원 수만큼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고유번호 추첨결과를 운영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단, 모든 제안 참여자가 추첨을 하지 않은 경우 운영부서 입회하에 사업부서에서 고유번호를 추첨할 수 있다.

마. 운영부서는 공법선정위원회 평가 전일까지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하며, 평가위원(예비명부 포함)을 구성한다.

- 1) 추첨결과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순으로 선정한다.
- 2) 추첨으로 선정된 위원이 참석하지 못하거나, “바”에 따른 제척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위원의 고유번호 후순위자 순으로 평가위원을 선정한다.
- 3) 운영부서는 평가위원 불참자를 예상하여 선정된 위원의 고유번호 후순위자 순으로 예비평가위원을 추가 지정할 수 있다.
- 4) 운영부서는 평가위원(예비명부 포함)을 구성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한다.

바. 공법선정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내용과 관련한 서류를 확인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운영부서의 장에게 공법선정위원회 위원 기피신청서[서식 III-5]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위원은 공법선정위원회 해당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외한다. 운영부서는 공법선정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할 수 있다.

- 1) 위원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2) 위원이 해당 자문·심의 대상인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 6)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 7)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 8)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신청자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 마. 공법선정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는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의하며, 예산편성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 기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1) 수당 : 공법선정위원회 참석수당 2시간이내(90천원), 2시간 이상(130천원)
 - 2) 여비 : 공무원 여비 규정 준용(4급 상당)

6. 보안유지 및 서약서 징구

- 가. 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와 관련법령에서 허용한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 나. 공법을 선정하기 위한 위원회 평가 전에 보안유지를 위하여 평가위원들로부터 청렴 및 보안서약서(서식 III-4)를 제출 받아야 한다.

7. 자료제출 및 설명 요구

- 가. 운영부서는 평가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위원회에 위원장 및 위원은 공법선정을 위한 위원회 개최시 제안 참여자에게 질의·응답을 통해 해당 공법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다. 제안 참여자는 공법선정을 위한 위원회 개최시 해당 공법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8. 평가결과의 공개

가. 운영부서는 공법선정을 위한 위원회 개최 후(서식Ⅲ-7)에 따라 평가위원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해야 한다.

나. 운영부서는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평가 위원별 평가결과’의 ‘평가 위원명’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해야 한다.

I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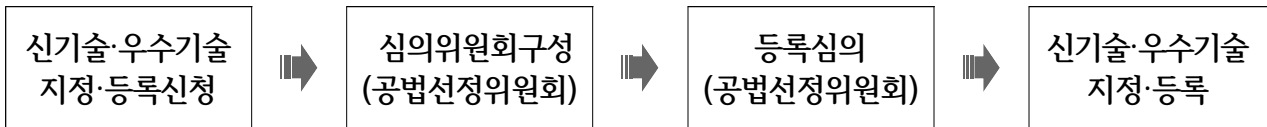
신기술 및 우수기술 지정·등록

1. 개요

가. 운영부서의 장은 정부가 인증한 신기술(NET)과 지역 중소기업의 우수한 기술(특허 등)을 신기술 및 우수기술로 지정하고, ‘신기술 오픈마켓’에 등록하여 발주처가 믿을 수 있고,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나. 운영부서의 장은 정부가 인증한 신기술(NET)·우수기술(특허 등)을 공법선정위원회 심의회를 거쳐서 선정·등록하여야 한다.

2. 업무흐름도



<단계별 업무추진절차>

<p>① 신기술(우수기술) 등록 신청 (III-3 참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기술 신청자 : 정부인정신기술개발자 • 우수기술 신청자 : 지적재산권리자 ▶ 신청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기술 등록 요청서, 우수기술 지정·등록 요청서 • 설명서 • 원가산정기준(전문업체²⁾ 작성 원가계산서 포함) • 시방서 및 설계도면 • 정부인증 신기술증서 및 특허증(특허등록공보 및 등록원부) •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 변경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된 신기술·우수기술 권리자, 보호기간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변경신청을 하여야한다.
---	---



2) 원가관리협회에 등록된 원가계산용역기관

<p>② 공법선정위원회 등록심의회 구성 (Ⅲ-4 참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법선정위원회 등록심의회의 개최계획 수립 ▶ 심의회의 전문가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인 이상 10인 이내(위원장 포함) ▶ 심의사항 통보 ▶ 7명이상 위원회 개최
--	---



<p>③ 공법선정위원회 등록심의회 (Ⅲ-5 참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실사 대상 선정(필요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신청 신기술·우수기술을 적용한 현장 중에서 선정 ▶ 신기술·우수기술 등록심의회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기술 등록은 위원 과반수 동의 등록 • 우수기술 등록은 심의회의 위원의 신규성, 진보성, 현장 적용성을 평가하여 평균 70점 이상 지정·등록(5건 이상 시공실적 공법 과반수 동의로 지정·등록 가능) • 보호기간은 개별 관련법에 따른 보증기간 ▶ 경상북도 신(新,信)기술 오픈마켓 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부서의 장은 심의결과에 따라 등록 ▶ 신기술 및 우수기술 등록 취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받은 경우 • 해당 신기술에 중대한 결함에 있어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정부인증신기술 중 관련법에 따라 취소된 경우 • 사회적인 분쟁 등이 발생한 신기술 등 ▶ 심의회 위원의 세부평가 자료 비공개 원칙
---	--

3. 신기술 및 우수기술 등록 신청

가. 운영부서의 장은 다음과 같은 기술을 보유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공법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상북도 신기술 및 우수기술로 지정·등록하고, ‘신기술 오픈마켓’에 게재 하여야 한다.

- 1) 경상북도 신기술 등록 신청자는 다음과 같은 정부인증 신기술 (NET) 기술개발자로 한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건설신기술**

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른 **환경신기술**

다)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른 **방재신기술**

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 따른 **교통신기술**

마)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7조에 따른 **해양수산신기술**

2) 경상북도 우수기술 등록신청자는 다음과 같은 기술권리자로 한다.

가) 특허 등 지적재산권 권리자

나. 경상북도 신기술 및 우수기술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과 같은 신청서와 첨부 자료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기술등록 신청서·우수기술 지정·등록신청서(서식 I-1)

2) 기술설명서

3) 기술원가산정기준(원가관리협회의등록된원가계산용역기관에서 발급 받은 원가계산서 첨부)

4) 시방서 및 설계도면

5) 그 밖에 신기술(우수기술)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 운영부서의 장이 필요로 하는 서류

다. 경상북도 신기술 및 우수기술 등록자는 다음과 같은 변경사항이 발생 시 즉각 변경신청서(서식 I-2)제출하여야 한다.

1) 보호기간의 변경

2) 특허 등 지적재산권 권리자의 변경 사항

3) 기타 사항 등

※ 변경사항의 미 신청, 지연 신청, 부정 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와 등록자의 책임으로 한다.

라. 운영부서의 장은 경상북도 신기술 및 우수기술 신청한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첨부자료를 검토하여 공법선정위원회에 선정한다. 검토 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경우 추가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4. 공법선정위원회 등록 심의회 구성

가. 공법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II.공법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을 기준으로 한다.

5. 공법선정위원회 등록 심의

가. 운영부서의 장은 경상북도 신기술 및 우수기술 신청자에게 공법선정위원회 개최 일정 및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나. 등록심의를 신청한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야한다. 부득이한 경우 운영부서에서 직접 설명 할 수 있다.

다. 운영부서의 장 및 공법선정위원회 위원장은 필요시 현장실사를 할 수 있다.

라. 공법선정위원회 등록심의 위원은 신청자료 및 설명자료 등을 검토하여 신기술·우수기술 등록 심의 평가서(서식 I-6)에 따라 신기술 등록 및 우수기술 지정·등록을 평가하여야 한다.

마. 공법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우수기술 등록심의 위원이 우수기술 등록 심의 평가서(서식 I-6)에 따라 평균 70점 이상인 제안 기술을 경상북도 우수기술로 지정·등록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실적이 5건 이상인 공법은 참석 위원의 과반수 동의로 등록 할 수 있다.

바. 공법선정위원회 위원장은 신기술 등록 참석 심의 위원의 과반수 동의 시 등록을 결정하며, 그 보증기간은 개별 관련법에 따른 보증기간으로 한다.

사. 경상북도 신기술 및 우수기술 등록자가 변경신청서(서식 I-2)제출하면 재심의 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부서의 장은 보호기간 연장 등 경미한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아. 운영부서의 장은 결정된 경상북도 신기술 및 우수기술은 그 자료를 ‘신기술 오픈마켓’에 게재하여야 한다.

자. 운영부서장의 장은 우수기술 및 신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하며, 등록 취소된 신기술 및 우수

기술은 취소일로부터 2년간 경상북도 신기술 및 우수기술로 등록할 수 없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 2) 해당 우수 기술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건설공사에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3) 정부인증신기술 중 관련법에 따라 취소가 된 신기술
 - 4) 사회적인 분쟁 등이 발생한 신기술 등
- 차. 개별법에 따라 신기술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등록이 취소된 경상북도 신기술 중 특허 등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권리자는 우수기술 지정·등록 신청서(서식 I-1)를 작성하여 운영부서의 장에게 신청하면 운영부서의 장은 경상북도 우수기술로 지정·등록 할 수 있다

IV 신기술 · 특허공법 선정(설계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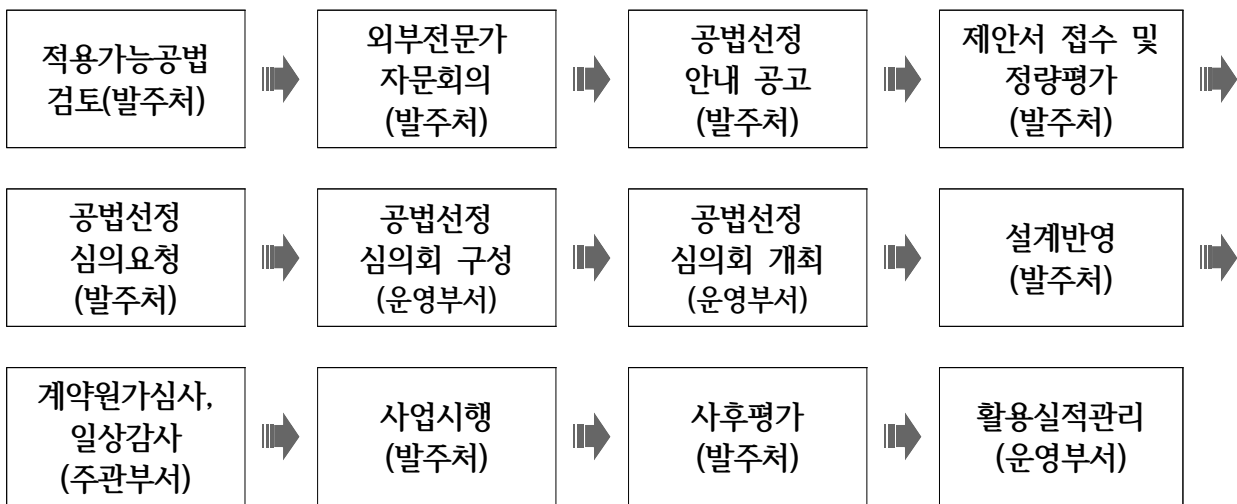
제1절 통 칙

1. 개 요

가. 운영부서의 장은 경상북도 신기술 및 우수기술로 지정·등록되어 ‘신기술 오픈마켓’에 게재된 신기술 및 우수기술이 경상북도 등 (발주처)의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나. 발주처의 장은 경상북도 신기술 및 우수기술이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하며, 경상북도 신기술 및 우수기술의 활용결과에 따라 사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업무흐름도



<단계별 업무추진절차>

<p>① 적용가능공법검토 (IV-2-1 참조)</p>	<p>▶ 신기술·특허공법 설계 반영 검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공법과 신기술·특허 장단점 비교·검토 • 경상북도 신기술 오픈마켓, 한국국토교통기술진흥원, 한국 특허정보원 등 관련기관 제공 자료 활용
-----------------------------------	---



<p>② 외부전문가 자문 회의 (Ⅳ-2-2 참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주처는 외부전문가 자문을 통한 필요성 및 평가 방법 검토(필요시) • 국가·타지자체 공무원, 해당분야 및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 • 발주부서에서 조사,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의견 제시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문결과 반영
-------------------------------------	---



<p>③ 공법선정 안내 공고 (Ⅳ-2-3 참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제안서 제출 마감일 7일전(긴급 5일) 제안요청 내용 및 평가기준 안내 • 사업규모, 예정공사기간, 소요예산 등 사업개요 공지 • 안내공고에는 추정금액, 선정기준(절차), 제출기간, 필요서류 등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 명시 ▶ 발주부서는 공고내용을 운영부서로 통보
------------------------------------	--



<p>④ 제안서 접수·평가 (Ⅳ-2-4~6 참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주처는 지정된 기한까지 제안서 접수 • 제안서 교부는 홈페이지,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재 같음 가능 • 제안서 접수시 위원 고유번호 추첨 실시 ▶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정량평가 실시 • 정량평가 순위에 따른 평가대상 공법의 수를 선정공고에 명시하고 통과한 공법에 한해 공법선정위원회 평가 가능
-------------------------------------	--



<p>⑤ 공법선정심의 요청 (Ⅳ-2-7 참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주처의 장은 공법선정심의 요청서(서식 Ⅲ-1)를 작성하여 제출 • 정량평가 결과 및 고유번호 추첨결과 운영부서로 제출 ▶ 공법선정 심의 대상 • 추정금액(도급금액+관급자재금액) 1억 원 이상 특정 공법
-----------------------------------	--



<p>⑥ 공법선정위원회 구성 (Ⅳ-2-8 참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법선정위원회 공법 선정 심의 운영계획 수립 ▶ 분야별 심의위원 선정 • 위원장 포함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 ▶ 심의사항 통보 ▶ 위원 중 7인 이상 참석 시 위원회 개최
------------------------------------	---

<p>⑦ 공법선정위원회 심의 (Ⅳ-2-9~12 참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법선정위원회 위원은 공법선정 공고문에 명시된 세부평가기준(서식 Ⅲ-1 별표1~3 참고)에 따라 정성평가 ▶ 평가결과에 따른 점수, 순위를 심의회에서 즉시 공개 (발주처에 서면 통보) ▶ 발주처 제안공법 설명(용역사, 개별공법사) ▶ 평가결과 공개
↓	
<p>⑧ 설계반영 (Ⅳ-2-13 참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주처의 장은 심의회에서 선정된 공법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법선정자(기술권리자)와 협약서 체결
↓	
<p>⑨ 계약원가심사, 일상감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원가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상북도 계약원가 심사업무 처리 규칙 준수 ▶ 일상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준수 <p>(※ 일상감사 완료 후 공법선정심의 요청 가능)</p>
↓	
<p>⑩ 사업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착수 전 선정된 공법 설계도서 검토 ▶ 시공계획서 검토 후 시공 승인 ▶ 기술활용관리표 작성 ▶ 준공된 이후 시공위치에 표찰 부착(기술명칭, 번호, 기술개발자, 시공사, 시공일자 등)
↓	
<p>⑪ 사후평가 (Ⅳ-3-1 참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주처의 장은 신기술(우수기술) 사후평가서(서식 Ⅳ) 작성하여, 운영부서의 장에게 서면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공일로부터 1개월 이내
↓	
<p>⑫ 활용실적관리 (Ⅳ-3-2 참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용실적 등 유용한 자료를 축적, 공법선정위원회의 위원과 건설관련 공무원 등에게 참고자료를 제공 ▶ 우수한 기술개발자, 활용촉진에 기여한 기관·법인 또는 단체 포상

제2절 공법선정 절차

1. 신기술·특허공법 적용여부 결정

- 가. 발주처는 해당 신기술·특허 및 우수기술의 반영 검토를 위해 경상북도 신기술 오픈마켓에 등록 된 자료 및 한국국토교통기술진흥원, 한국특허정보원 등 관련기관 제공자료를 활용하여 신기술·특허 공법 적용 여부를 검토한다.
- 나. 발주처는 “가”에 따라 제공자료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관련 기관에 자료가 없는 경우 기술보유자에게 직접 공법 설명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다. “나”에도 불구하고 기술보유자가 공법 설명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발주처가 취득한 자료로 신기술 등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발주처에서 조사·제공한 자료가 부족하여 검토가 곤란한 경우 외부전문가 자문을 거쳐 신기술·특허공법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2. 외부전문가 자문

- 가. 발주처는 신기술·특허공법 적용검토를 위해 외부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공법선정 공고 전에 외부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나. 외부전문가는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해당 분야 및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고, 외부전문가는 자문회의에서 발주부서에서 조사,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신기술·특허공법의 적용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공고 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및 공법 평가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 다. 발주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공법선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3. 공법선정 안내 공고

가. 발주처는 설계에 신기술·특허공법을 반영하려는 경우 해당 공사와 관련한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7일전(긴급하거나 재공고인 경우 5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나. 발주처는 공법선정 안내 공고 시 신기술·특허공법의 보유자에게 사업의 규모, 예정공사기간, 소요예산 등 사업개요를 공지하여야 한다.

다. 발주처는 안내공고에 다음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 1) 신기술·특허공법 적용할 부분 및 추정금액
- 2) 기술보유자가 제안한 모든 신기술·특허공법이 해당 공사에 적합하지 않다고 공법선정위원회에서 판단한 경우 신기술·특허공법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 3) 공법 제안 요청기한과 요청에 필요한 서류
- 4) 공법 선정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 5) 공법 제안서의 제출기간
- 6) 공법 제안서의 내용
- 7) 제안서의 평가요소와 평가방법
- 8)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
- 9)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라. 발주처에서는 공법선정 안내 공고를 한 경우 운영부서에 공고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4. 제안요청서의 교부

가. 발주처는 해당 선정공고에 참여하고자 하는 제안 참여자에게 제안요청서를 교부해야 하며,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함으로써 그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나. 발주처는 공법 제안요청서에 다음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 1) 공법제안 범위
- 2) 공법 검토를 위한 요구사항
- 3) 제안서의 규격
-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5. 제안서의 제출

가. 제안 참여자는 공고 및 제안요청서에 정한 바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지정된 기한까지 발주처로 제출해야 한다.

나. 발주처는 원활한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을 체결을 위해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제안 참여자에게 예비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6. 제안서의 평가

가. 공법 제안서는 공사비, 경영상태 등 정량적 평가와 시공성, 안전성, 유지관리, 경관성 등 정성적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 항목과 배점한도는 <서식 III-1 별표 1>과 같다.

나. 공법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 요구를 해야 한다.

다. 보완을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명확하지 않아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공법을 제외하고 평가한다.

라. 발주처는 원활한 공법선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정량적 평가 순위에 따른 공법선정위원회 평가대상이 되는 공법의 수를 공법 선정공고에 명시하고 통과한 공법에 한 해 공법선정심의 요청할 수 있다.

마. 발주처는 “5-나”에 따라 예비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 제출을 요구한 경우로서 공법선정 안내공고에 예비 협약서를 미제출한 제안 참여자의 공법에 대해서는 평가 시 제외한다는 사항을 명시하고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7. 공법선정심의 요청

가. 발주처의 장은 특정 공법을 설계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공법선정심의 요청서(서식 III-1)을 작성하여 운영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법 적용 지역 및 시설물 현황

- 가) 공법 적용 지역이나 시설물 현황 등 현지여건 기록
- 나) 위치도, 사진, 관련 도면 등

2) 공법 적용 사유

- 가) 일반공법을 적용할 수 없고 신기술 및 특허 등록된 공법적용 사유 : 공법개요, 장단점, 공사비 등 검토하여 신기술 및 특허 등록된 특정 공법 적용사유 구체적 설명

3) 공법 기술검토의견서

- 가) 제안된 공법에 대한 공법개요, 공법특징, 공사비 등 현지여건을 고려한 기술검토의견서 작성

8. 공법선정심의회 구성

가. 공법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II.공법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을 기준으로 한다.

9. 공법선정 평가 방법

가. 평가요령

- 1) 공법 제안서의 평가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한다.
- 2) 정량적 평가는 발주처에서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들이

평가한다.

- 3)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 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 평균한 점수로 한다. 다만,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한다.
- 4) 운영부서 담당자는 공법 제안서 평가점수 및 평가순위를 공법 선정자 결정 전에 발표해야 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공법 제안 참여자가 정성·정량적 평가를 위해 제출한 자료 중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중대한 허위 또는 오류가 있다고 공법선정위원회에서 판단한 경우 해당 평가 항목은 “0점” 처리한다.

다. 평가위원 사전접촉 제안 참여자 감점

- 1) 공법선정 외부전문가 회의 개최일(외부전문가 자문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법선정 공고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제안 참여자 및 해당 제안과 관련하여 제안 참여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협력업체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공법선정과 관련하여 평가 위원에게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인식시키는 행위를 포함한다)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평가 최종점수에서 10점을 감점한다.
- 2) “1)”에 따른 사전접촉 행위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해 사전접촉 여부 확인(신고)서(서식 III-5)를 징구하고, 사전접촉 사실을 확인(신고)한 평가위원도 심사에 참여한다.
- 3) “2)”에 따라 사전접촉 행위가 확인(신고)된 경우 사실관계를 지체 없이 조사하여야 한다.
- 4) 감점은 해당 공법선정에 한하여 적용하며,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 접수 및 사실조사, 감점여부에 대한 결정 및 감점처리는 공법 평가 완료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라. 최초 공법선정 공고에 따른 제안 참여자가 없거나 1인일 경우에는

재공고를 하여야 한다.

10. 공법선정심의회 심의

- 가. 발주처의 장은 공법선정심의회 개최 전 까지 공법 제안사의 참석자 자격 및 참석여부를 확인하여 참석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고, 미 참석 시 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 나. 운영부서 장은 발주처 장에게 위원회에 제안 설명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부서의 장은 필요 시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용역사 또는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직접 안건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 1) 제안 설명은 위원회에서 직접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배부용 인쇄자료로도 가능하다.
 - 2) 제안 설명은 개별 공법사별로 5분 정도로 설명하여야 하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한다.
 - 3) 설명, 질의·답변 등 시간이 초과할 경우 및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장은 중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다. 발주처의 장은 선정심의 신청 시 공법선정 세부평가기준(서식 III-1, 별표2)에 따라 정량 평가 결과를 운영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라. 공법선정심의회 위원은 발주처에서 제출한 심의 자료 등을 검토하여 공법선정 세부평가기준(서식 III-1, 별표3)에 따라 정성 평가 결과를 공법선정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마. 공법선정심의회 위원장은 심의 위원이 평가한 정성평가와 발주처에서 평가한 정량평가를 합산하여 순위·점수를 즉시 심의회 위원 및 발주처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운영부서는 이를 발주처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1. 공법 제안서 선정

- 가. 발주처는 제안 참여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공법선정위원회에서

해당 계약에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제안 중 정량적 평가분야와 정성적 평가분야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최고점수를 받은 자의 공법을 1순위로 선정하여야 한다.

- 나. 최고점수가 동일한 제안 참여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정성적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정성적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 다. 재공고 실시결과 제안 참여자가 1인인 경우에는 공법선정위원회에서 제안된 공법을 평가하여 해당 공사에 적용이 가능하고 일반적인 공법과 비교하여 우수하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공사의 공법으로 선정할 수 있다.
- 라. “가”부터 “다”까지 선정된 자와 협상을 통해 신기술·특허공법의 사용협약을 체결하되, 협상이 결렬된 경우로서 차순위자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신기술 등의 사용협약을 체결하고 차순위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를 통해 선정한다.
- 마. 발주처에서 선정공고 시 추정금액을 초과하여 제안한 공법은 공법 선정 시 제외할 수 있다는 사항을 명시한 경우에는 추정금액을 초과하여 제안한 공법을 공법선정 시 제외할 수 있다.
- 바. 제안된 신기술·특허공법이 해당 계약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공법선정위원회가 판단한 경우에는 신기술·특허공법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12. 공법선정자 통지

- 가. 발주처는 해당 공사의 공법선정자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공법 제안 순위와 공법적용 범위 등에 대한 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 나. “가”에 따라 공법선정자에게 통지하는 경우 공법선정자가 신의 성실 원칙을 위반할 경우 해당 공법에 대한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3. 공법선정자의 공법 설계반영

- 가. 발주처는 공법선정자가 제안한 공법에 대해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공사의 설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나. 발주처는 설계에 반영시 공법선정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공법적용 방법 등 제안서 내용을 기준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 다. 발주처의 장은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특허공법에 대하여 공법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법선정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아 그 기술을 다른 공법으로 설계변경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절 사후평가 및 그 밖의 사항

1. 사후평가

- 가. 발주처의 장은 경상북도 신기술 및 우수기술을 적용하여 사업을 준공한 때에는 준공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후평가서(서식 IV)를 작성하여 운영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나. 발주처의 장은 ‘신기술 오픈마켓’에 게재된 경상북도 신기술 및 우수기술이 시공된 위치에는 사후 평가와 홍보 등을 위하여 등록 신기술 명칭 또는 번호, 기술보유자, 시공자, 시공일자 등의 정보를 표시한 경상북도 신기술(우수기술) 활용표지판을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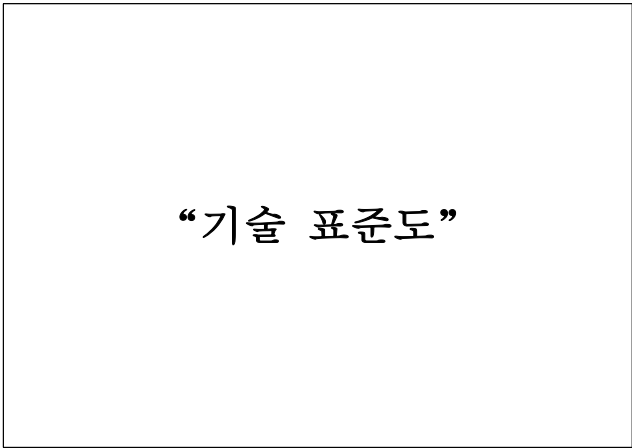
2. 활용실적관리

- 가. 운영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자료를 축척하여 건설산업의 활성화에 활용할 수 있다.
 - 1) 해당 신기술 및 우수기술 개요 및 품셈
 - 2) 공법선정위원회 심의회의 결과

3) 그 밖에 신기술 및 우수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유익한 정보
 나. 도지사는 우수한 기술개발자 및 경상북도 신기술 및 우수기술을
 적용하여 예산절감 등 활용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자 또는
 기관·법인 및 단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경상북도 신기술(우수기술) 활용표지판

- 사 업 명 :
- 등록번호 :
- 기술명칭 :
- 기술내용 :
- 보 유 자 :
- 시공기간 :
- 발 주 처 :
- 시 공 자 :



3. 그 밖의 사항

- 가. 다른 법령에 따라 공법 선정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따라 공법을 선정할 수 있다.
- 나. 이 공법선정 평가점수에서 소수점이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0절 “2. 소수점 처리방법”을 준용한다.
- 다. 발주처의 장은 선정된 공법제안자로부터 정성평가 항목 중 ‘시
 공성’의 지역 인력·자재·장비 활용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한
 증빙자료를 제출 받아 확인하여야 한다.